

#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 동향

## (2024년 2분기)

본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작성한 보고서이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 종합행정지원센터 종합상담실 환경부 과건관(02-3497-1738)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목 차



<b>I. 주요 정책</b> .....	<b>1</b>
1. (정부합동) 부담금 완화로 영세업체 등 부담 경감 .....	1
2. 환경책임보험 가입 변경 관리 철저 .....	2
3. 일상생활 속 환경안전 강화 .....	5
가. 수입야생동물 질병 검역 강화 나. 운행차(자동차,이륜차) 소음 관리 강화	
4.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표시제 시행 .....	8
<b>II. 규제 개선 동향</b> .....	<b>10</b>
1. 화학물질 통합안전관리 체계 마련 .....	10
2.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 국민생활에 적용 .....	12
3. 배출권(K-ETS) 이월제한 기준 완화 적용 시행 .....	16
<b>III.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b> .....	<b>16</b>
1.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기업 역량강화 지원 .....	16
가. 통합헬프데스크 등 CBAM대응 정부합동지원 나. Scope3 배출량 산정 가이드	
2. 탄소중립, 순환경제 촉진 .....	21
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 I. 주요 정책

## 1

### [정부합동] 부담금 완화로 영세업체 등 부담 경감

- 정부는 5.28(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9개부처 소관)을 심의·의결했고, 7.1일(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았다.
- 이 중 환경 분야 부담금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15,190→7,600원/반기)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기업범위도 확대(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한다.
  - 또한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환경 이외 다른 분야 주요 변경에는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인하(복수 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면제) 등이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행령 개정사항 및 주요 내용 >

부담금	부처	시행령	주요 내용
국제교류기여금	외교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복수여권(△3천원), 단수·여행증명서(면제)
출국납부금	문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납부액 인하(1→0.7만원), 면제 확대(2→12세 미만)
	행안	제주특별법 시행령	
농지보전부담금	농식품	농지법 시행령	非농업진흥지역 효율 인하(30→20%)
전력기금 부담금	산업	전기사업법 시행령	단계적 효율 인하(3.7→3.2→2.7%)
석유 수입·판매부담금	산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년 한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인하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산업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효율 인하
폐기물부담금	환경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영세 자영업자 소유 경유 화물차 50% 인하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중소 감면기준 매출액 확대(600→1,000억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부담금	국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년 한시 부과율 50% 인하(1.0→0.5%)
방제부담금	해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효율 인하(내항선 △50%, 외항선 △10%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	산지관리법 시행령	면제대상 확대(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등

## 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4.19~)

-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시행
-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제출자료\*가 보다 구체화 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도 명확해졌으며,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되었다.
  - \*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영업정지 6개월
-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의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한다.

## 나.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출범

- 한편,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 \*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 보험사 선정

- 제4기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 결과와 함께 주민 피해 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붙임 : 1.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 주요 개정 내용 2. 환경책임보험 개요

<b>붙임1</b>	<b>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 주요 개정내용</b>
------------	------------------------------

**① 개정 법령(법률 개정 '23.4.18, 시행 '24.4.19) 반영**

-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사업장 내 환경피해 유발가능성(취급 물질, 관리실태 등), 사업장 외 피해노출 및 확산가능성 등 조사
  - ※ 조사결과를 보험료의 할인·할증,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 가능
- **(손해사정 요구 등)** 건강영향조사 결과 보험 가입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가 발생하여 보상 필요시, 보험사에 손해사정 실시 요구 가능
  -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간 손해사정에 미착수하거나, 결과를 거짓·허위로 통보한 경우, 환경부 직권 손해사정 가능

**②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 신설 및 사업내용 구체화**

- **(사업장 내)** 사업장 시설·관리 개선 및 영세기업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
- **(사업장 외)** 오염물질 유출 저감, 인근주민 노출 저감 및 위해 방지 등

**③ 보험회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참여보험사 역할 확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미가입 사업장 확인·가입 독려, 교육·홍보 등 업무에 적극 협조
- **(전문인력 확보)** 참여보험사는 환경·방재 등 전문인력을 확보 하고, 일정기간 사업단에 파견을 보내어 업무 협조

1. 도입 배경

- 구미 불산사고('12) 등 계기로 △신속한 피해자 보상, △위험 분산을 통한 사회 비용 경감을 위해 의무보험으로 도입('14.12 법 제정, '16.7 시행)

2. 가입 대상

-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가입 의무화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

※ (가입현황) 가입대상 15,302개 사업장 중 98.9%인 15,127개소 가입('24.2)

3. 환경책임보험의 배상범위 및 한도

- (보장범위)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발생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등 보장

환경책임보험이 배상하는 사항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 (보험 보장한도) 단일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금액은 시설 종류에 따라 30억원에서 300억원

<단일사고 배·보상 체계>		시설의 종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구분)	보장금액 (환경책임보험)	배상책임한도 (사업자)
피해액	300억원	'가'군의 시설	3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그 이상			
	보험사	'나'군의 시설	대기업·중기업 100억원	1,000억원
	사업자			
	국가	'다'군의 시설	대기업·중기업 50억원	500억원
	사업자 무자력시			
	300억원 이상			
	국가			

- '가'군 시설의 경우 300억원까지 보험을 통해 보상, 300~2,000억원까지는 사업자 부담, 2천억 초과시 국가가 피해구제

## 가. 수입 야생동물 질병 검역 강화(5.19~)

□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질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동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야생동물법’ 일부 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21.5.18. 공포, '24.5.19. 시행)

○ 시행령에 따라 수입 장소는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이며, 검역 없이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5월 19일부터 검역 중이며,

\*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23년 관세청 통관 기준)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1.개정 요지 2. 야생동물 검역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 붙임1

### 야생동물법 개정 대비 하위법령 개정 요지

법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
야생동물검역기관, 야생동물검역관, 지정검역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제34조의13 및 제34조의14 신설 등)	야생동물검역기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23조의6 신설)	검역대상질병, 야생동물검역관, 야생동물검역사, 지정검역물 범위, 수입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제4조의3, 제44조의13 내지 제44조의15, 제44조의19, 제44조의20,
수입금지, 수입금지물건 처리 (제34조의15 및 제34조의16 신설)	-	수입금지사항의 예외적 수입허가, 수입금지물건 조치 (제44조의16, 제44조의17)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 수입검역장소, 검역시행장의 보관관리인, 지정검역시행장의 검역관리인 (제34조의20, 제34조의21, 제34조의22 및 제34조의23 신설)	검역관리인의 임무 (제23조의7 신설)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수입장소 지정(인천국제공항),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검역시행장 지정, 지정검역물의 관리, 검역 불합격품 처분(제44조의18, 제44조의21, 제44조의22, 제44조의23, 제44조의25, 제44조의26)
수입검역 의무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제68조제1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신설 등)	권한의 위임,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제39, 40조 개정)	행정처분 기준 추가 (제44조의24)

□ 추진 배경

-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유입·검역·판매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 야생동물 검역·통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검역\* 근거 마련, 야생동물 매개 질병 검역 강화 방안 추진
- \* (검역) 해외로부터 질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에서 검사하고 소독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모든 조치와 예방적 활동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 야생동물 검역제도 개요

- (목적) 해외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의 유입 방지 및 국내 전파 차단
  - ※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제도' 근거 마련('21.5.18.)
- (주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
  - ※ 환경부장관 위임사무가 아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고유사무
- (대상) 파충류 등 야생동물(사체 포함) 및 생산물(가죽, 살 등)
  - 파충류와 포유류·조류에 대해서 검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검역 대상질병은 전파력·치사율, 국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정·관리

구 분	검역 내용	소관 부처
포유류·조류	· 가축전염병(ASF, 구제역, AI, 광견병 등 68종)	농식품부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환경부
파충류	·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환경부
양서류	· 수산동물전염병(잉어봄바이러스병 등 26종)	해수부

- (장소) 화물·휴대품이 집중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선 실시
  - ※ (수입현황) 파충류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23년 관세청 통관 기준)
- (절차) 휴대품, 화물에 따라 별도 절차를 거쳐 검역 추진



## 나. 운행차(자동차,이륜차) 소음 관리 강화(6.14~)

- 운행차(자동차,이륜차)의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6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 이에, 법률에 따라 기존에 임의로 지자체가 실시하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이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함께, 같은 날 함께 시행되는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의 수시 점검 실적은 반기 단위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 입력토록 하여 단속 실적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되었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되었다.
    - \* 그간 엔진소음차단시설(흡음재, 소음덮개 등) 등을 개조한 흔적이 없으면 점검이 면제되었으나 노후화되면 오히려 고소음 발생
- 개정 법령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시행규칙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점검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법 제36조제1항)</li> <li>○ (합동점검) 경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점검 근거 마련(법 제36조제2항)</li> <li>○ (반기별 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 점검 실적을 반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법 제36조제4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시점검 면제 제외)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거나 떼어지지 않은 자동차를 수시점검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함(규칙 제42조제2호 삭제)</li> <li>○ (수시점검실적 소음정보전산망 입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함(규칙 제42조의2)</li> </ul>

□ 자원재활용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시행 중이다.

\*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23.3.28.) 및 시행(‘24.3.29.)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

○ 동 제도를 통해 기업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는 한편 친환경 홍보수단이 생기게 되고,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희망기업은 확인 마크(상세: 붙임)를 붙여 재생원료 사용을 홍보할 수 있게 된다.

□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에 신청하면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 신청은 3월 29일부터 전자우편(rmcs@keco.or.kr)을 통해 받으며, 절차 및 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문의처: 032-590-4175, 4177, 4183

□ 한편 정부는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개요.

□ 도입 취지 및 배경

-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생산이 점차 확대되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 시장에서의 홍보수단 제공 및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도입(‘24.3.29. 시행)

□ 제도 주요내용

① 친환경 소비 유도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기능

- (최소비율) 식품용 PET병 및 기타 제품·용기 10%, 전기·전자 제품 20%
- ※ 표시 도안내 사용비율은 5% 단위로 표기

 	 
<“가”형>	<“나”형>

② 기업 자율 선택사항으로 추가 부담 최소화

- 친환경 마케팅, ESG 경영요구 확산 등에 따라 기업 필요 시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③ 해외 재생원료 사용실적 인증체계를 활용하여 호환 연계

- 해외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국제기관에서 인증받은 경우 확인과정에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 중장기적으로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인’과 ‘해외 재생원료 인증체계’ 상호 연계 추진

ISCC+(EU)	GRS(미국)	RCS(미국)
		

## Ⅱ. 규제 개선 동향

### 1

### 화학물질 통합 안전관리체계 마련

□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이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되었다.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4.23.), 공포·시행(4.30.)

□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했다.

□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었는데, 이제 화학물질안전원이 기존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全)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연구 기능을 강화

□ 종전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은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를 받았으나,

○ 이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되고,

○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화학물질정보시스템(<http://kreach.me.go.kr>),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

붙임 : 조직 기능 개편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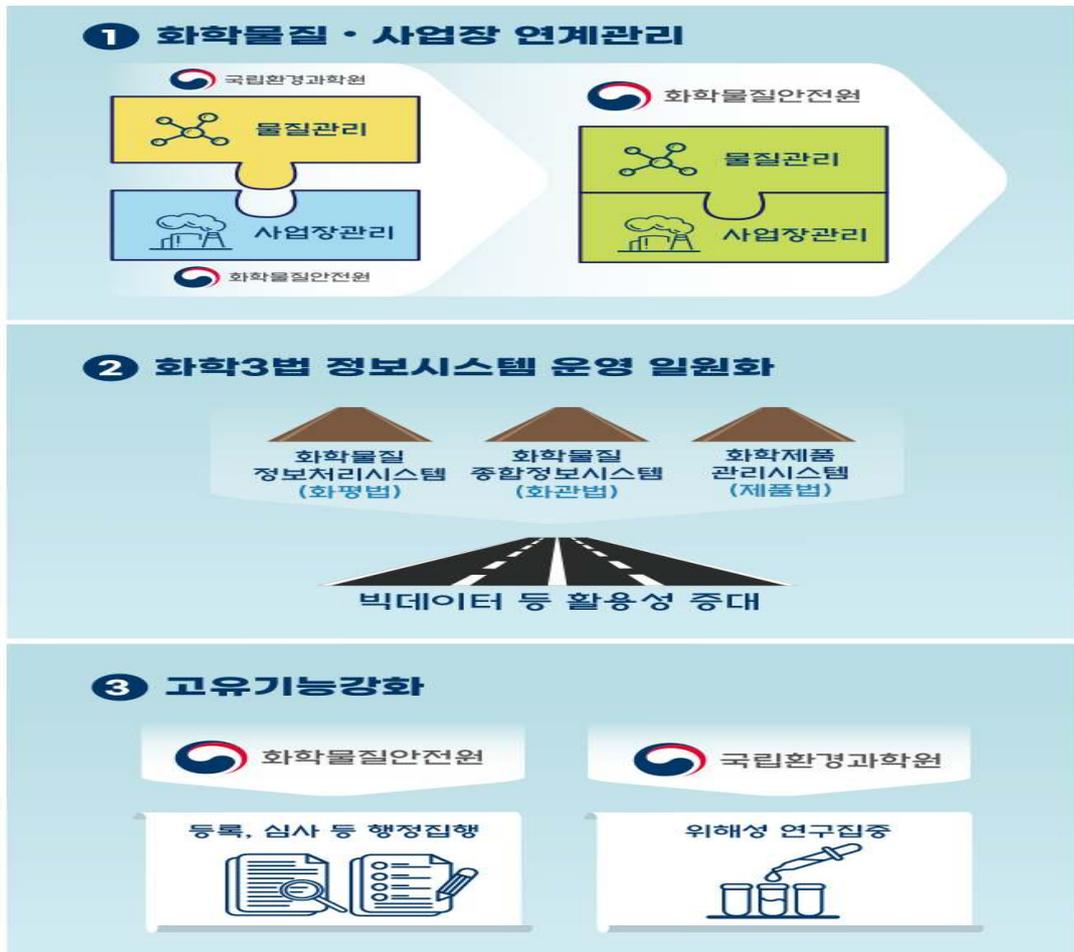
# 붙임

# 조직 기능 개편 전·후 비교

## □ 조직 개편도



## □ 기능 개편 전·후 비교



□ 초 소분 제공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이 의결되어 본격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최근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서면)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

□ 이 중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했다.

○ 이는 살균제 제조 시 적용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 이에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 및 종교 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정을 허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올해 4월에 접수된 민원으로서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다.

□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 이 사례는 기업 간담회('24.4월)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이다.

\* △첨부서류(6~8종) → 제품개선 보고서 1종, △공장심사 항목(5종) → 제품 개선사항 확인, △심사원 2인 → 1인(심사비용 22.2% 절감)

(안건1) 제과점 생일초 등, 날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화학제품관리과)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 소분 판매·증여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처벌* 대상</li> </ul> <p>*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하여,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 허용</li> </ul>

(안건2)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화학물질정책과)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량을 등록·신고의 기준물량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24.2월 공포, '25.8.7. 시행)</li> </ul> <p>* 개정안 중 화학물질 분류 세분화 등의 법 개정 사항은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1년6개월 후 시행토록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동 물량에 대해 면제확인을 받아 등록·신고의 기준물량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는 법률 개정안 즉시 적용</li> </ul> <p>* 동 내용은 개정 법률안의 다른 내용들과는 달리 하위법령 위임 사항이 없어 즉시 적용 가능</p>

(안건3)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녹색기술개발과)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도검사 주기가 지난 측정기기를 재검사 받은 경우에도 최초 정도검사 받은 날로 검사주기(예시: 매 2년) 산정</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기 존</th> </tr> <tr> <th>최초</th> <th>재검사일</th> <th>차기검사일 (유효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1.1.</td> <td>'23.10.1.</td> <td>'24.1.1. (3개월)</td> </tr> </tbody> </table>	기 존			최초	재검사일	차기검사일 (유효기간)	'20.1.1.	'23.10.1.	'24.1.1.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도관리 주기가 지난 측정기기를 재검사 받은 경우, 재검사를 받은 날부터 검사주기(예시: 매 2년) 산정</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개 선</th> </tr> <tr> <th>최초</th> <th>재검사일</th> <th>차기검사일 (유효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1.1.</td> <td>'23.10.1.</td> <td>'25.10.1. (24개월)</td> </tr> </tbody> </table>	개 선			최초	재검사일	차기검사일 (유효기간)	'20.1.1.	'23.10.1.	'25.10.1. (24개월)
기 존																			
최초	재검사일	차기검사일 (유효기간)																	
'20.1.1.	'23.10.1.	'24.1.1. (3개월)																	
개 선																			
최초	재검사일	차기검사일 (유효기간)																	
'20.1.1.	'23.10.1.	'25.10.1. (24개월)																	

(안건4)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화학물질안전원)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제조일로부터 2.5년 내 사용연장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사용연장검사기관이 '23.1에 지정되어 그전부터 사용되어 검사기한이 초과된 용기는 성능에 이상이 없음에도 검사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연장검사기관 지정 이전부터 사용 중인 용기에 한하여 제조일로부터 2.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한시적(~25.7월)*으로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li> </ul> <p>* 사용연한 초과 운반용기 신속한 양성회를 위하여 기한 지정</p>

**(안건5)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물이용정책과)**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시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과정보터 재심사 대상으로 인증 <b>소요기간(1~2개월 추가) 및 과도한 비용(약 180만원) 추가 발생</b></li> </ul> <p>* 서류심사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인증심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 시, <b>해당기업의 제품 재질 개선 후</b>,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는 <b>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b> 적용</li> </ul> <p>* 첨부서류(6~8종) → 제품개선 보고서 1종          공장심사 항목(5종) → 제품 개선사항 확인 심사원 2인 → 1인(심사비용 22.2% 절감)</p>

**(안건6)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폐자원에너지과)**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열분해유의 황분과 남은탄소의 재활용 기준*은 연료 사용 시 설정된 것으로, 열분해유를 석유정제업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b>동 기준 적용 불필요**</b></li> </ul> <p>* 황분: 0.2% 이하, 남은탄소: 0.15% 이하          **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원유도 황분·남은탄소 기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정제업에서 열분해유를 원료*로 사용 시, 황분·남은탄소 재활용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b>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b>」에 따라 <b>일괄 관리</b>되도록 함</li> </ul> <p>* 석유사업법에서는 투입원료가 아니라 석유, 열분해유 등을 투입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에 대해 품질관리</p>

**(안건7)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고시 시설기준 개선(화학물질안전원)**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가 누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b>처리시설로 상시연결 처리</b>하도록 하여 시설기준과 현장의 괴리 발생</li> </ul> <p>* 대부분 실제 공정에서 처리시설은 비상 가동시설로,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 배출구로 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가스공급설비에서 <b>가스 누출 시 기존 배출구 자동 차단 후 처리시설로 연결 처리하는 안전 시스템</b>을 갖춘 경우도 시설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li> </ul> <p>*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설 안전에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p>

**(안건8)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통합허가제도과)**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관리사업장 중 국가지자체가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운영할 경우, 실제 시설의 관리주체가 위탁업체임에도 불구하고 <b>공무원을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임명</b>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자체 위탁운영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를 위탁운영하는 <b>민간사업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b>를 고용하여 <b>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b>할 수 있도록 <b>허용</b></li> </ul> <p>* 선임·해임·퇴직신고 절차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p>

**(안건9)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일회용품감량추진단)**

개선 前	개선 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청·광화문 일대 일회용컵 회수·보상 시범사업 추진(7월~12월) 예정으로, 일회용컵은 지자체(중구, 종로구)에서 수집·운반 하여야 하나, 매장 수거는 <b>조직·인력·차량 등 한계</b>가 있어 수행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범사업 기간(7월~12월) 동안 <b>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위탁계약*하여 일회용컵을 수집·운반하도록 허용</b></li> </ul> <p>* 기존 1회용컵 보증금 대상 컵만 가능하였던 것을 서울 등 보증금 미적용 지역 일회용컵까지 확대</p>

### 3

## 탄소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적용 중

□ 6월1일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 중이다.

○ 적용 시기 : 2024년 KAU23 이월신청 시부터(2024.6.1.~)

○ 개선 내용 :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월 제한 기준 완화

- 잉여업체(무상할당량>배출권) : 당초 순매도량의 1배 → 3배로 개선

- 부족업체(무상할당량<배출권) : 당초 이월불가 → 부족양보다 더 많이 매수한 경우에는 보유한 전량 이월 가능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http://www.me.go.kr)) 및 기획재정부 누리집([www.moef.go.kr](http://www.moef.go.kr))에 게재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전자책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시행일: 2024년 6월 1일

#### Before

배출권의 이월제한 기준은 순매도량만큼 다음 이행년도로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만큼 이월

#### After

이제는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순매도량의  
3배로 완화

• 해당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배출권 전량 이월 가능합니다.

### Ⅲ. 탄소중립 이행업체 등 산업계 지원

#### 1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기업 역량강화 지원

##### 가. CBAM대응 정부합동지원

< 헬프데스크(1551-3213) 운영 등 정부합동 CBAM대응 관련 기업지원 >

□ 정부는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 등 올해 탄소국경조정 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참여 부처 : 산업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 (도입배경) EU는 2030 감축목표를 상향(‘90년 대비 40%→55% 감축)하고, 이를 위해 입법안 패키지 “Fit-for-55(EU-ETS 적용부문 확대, CBAM 도입 관련 입법안 포함)” 발표(‘21.7월)
- (내용) EU 내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시설의 역외 이전·역내 기업의 생산원가 상승 등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6개 대상품목(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을 EU에 유통 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 보고와 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 의무화
- (경과) CBAM 초안 공개(‘21.7) ⇨ CBAM 최종법안 발효(‘23.5) ⇨ 전환기간 보고 의무 관련 이행법(‘23.9) ⇨ **‘23.10월 전환기간\***
  - \* 전환기간(‘23.10~‘25.12): 보고의무 → 본격시행(‘26.1~): 보고의무+인증서 구매의무
  - EU는 ‘26년 전까지 20여개 이행법·위임법(국내 지불 탄소가격 인정 등)을 추가 제정하여 본격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예정

발표(잠정)	위임법	이행법
‘24.3분기	검증자 인정, 인증서 판매 및 재구매	신고자 승인, CBAM 등록소, 검증기관 인정, 검증
‘25.2분기	-	지리적 범위, CBAM 신고, 배출량 산정방법론, 간접배출량, 기 지불 탄소가격, 인증서 가격, 세관정보, EU ETS 무상할당 연계
필요시	면제국 현행화, 우회방지, 전력 관련 규정	-

① 그간 이원화되었던 환경부, 산업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 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1551-3213)한다. 통합번호(1551-3213)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 탄소 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을 진행한다.

\* 환경부(신청접수: 4.22~5.17), 중소벤처기업부 2차(5.6~5.31)

③ 우리 수출기업에 CBAM 해당 여부를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 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④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이던 설명회를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하여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 영남권(4월), 충청권(7월), 수도권(5월, 10월)

### <CBAM 대응 고민, 현장 상담으로 지원>

□ 환경부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며, 이를 위해 4.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하여 5.17일까지 희망기업의 신청을 신청받았다.

○ 지원대상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며, 유럽연합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생산 납품한 중간재가 최종적으로 유럽연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 생산되면 그 중간재(전구물질)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 올해는 총 60개 사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제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지원한다.

○ 아울러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툴)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상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탄소 배출량 산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이번 기업지원 상담에 대한 접수 문의 및 확인은 도움창구(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업 개요**

- (목적) CBAM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 및 중간재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별 배출량 산정 지원을 통한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
- (지원규모) 4억원 / 60개사
  - ※ 자부담금 없음(전액 무료 지원)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및 수출업체에 중간재(전구물질)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컨설팅과 중복지원 불가
- (모집기간) '24.4.22.(월) ~ 5.17.(금), 16:00
- (모집방법) EU CBAM 헬프데스크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CBAM 제품당 배출량 산정 지원(산정틀 및 템플릿 등)
  -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업 내부 교육
  - ※ 배출량 산정의 검증, 기지불 탄소 등에 대한 지원은 '25년 수행 예정

**□ 기대 효과**

- 기업 자체 대응역량 강화로 대응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
- 배출량 산정방법론 습득으로, CBAM 등 다양한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역량 강화

## 나. 이차전지배터리 맞춤형 스코프3 산정 안내서

- 최근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제도화<sup>①</sup>, 공급망 실사<sup>②</sup>, '유럽연합(EU) 배터리법<sup>③</sup>'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에, 지난 4월 환경부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 업계 등 민간과 함께 마련한 이차전지(배터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sup>④</sup>)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발간했다.
- 이번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sup>⑤</sup>의 결과물로, 각 사의 산정방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만들었으며, 환경부 누리집 (me.go.kr) 및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본문 중 용어설명>

- ① (ESG공시기준 제도화)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 I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지속 가능성 공시 최종안 발표('23.6), 유럽연합(EU) ESRS(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승인('23.7.),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24.3.)
- ② (공급망실사지침) EU는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분야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상임대표위원회 가결('24.3.15.)
- ③ (유럽연합배터리법) 배터리의 전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④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는 범위에 따라 스코프 1~3까지 구분
  - √ Scope 1 : 기업의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량(예시: 보일러, 소각로 등)
  - √ Scope 2 : 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예시: 전력, 스팀, 냉방 등)
  - √ Scope 3 : 기업의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예시: 구매한 원자재의 생산·수송, 판매 제품의 사용 등)
- ⑤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 그간 환경부는 주요 수출국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기준의 연이은 발표,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의 의회 통과(2023.6.14.)에 따라 이차전지 업계의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7월부터 그해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

안내서 표지	안내서 특징
 <p>2차전지 업종을 위한 Scope 3 배출량 산정 안내서</p> <p>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p> <p>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rea Environment &amp; Energy Technology Institut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 (인벤토리)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음</li> <li>○ 특히,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차전지 업계의 활용도를 높였으며,</li> <li>○ 주제(카테고리)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li> </ul>

## 가. '24년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4월 25일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 작년 25개 기업에 약 54억원 지원, 약 4조 6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
- 올해 협약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약 3조 9천억 원 규모(정부예산 약 55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다.
  - 참여기업이 발행하는 녹색채권 분야는 △무공해 운송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이차전지 소재 제조,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비 설치 등이다.
- 한편, 이번에 지원받는 23개 기업의 사업 목록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등 매년 환경부가 지원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확인할 수 있다.
  - \* 환경부 보도자료(4.25일자) \*\* 2024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

붙임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2.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개요

- (정의)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
  -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Substantial Contribution)
  -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Do No Significant Harm)
  -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Minimum Safeguards)
- (구성)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판단절차)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항목	내용
활동기준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인정기준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배제기준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보호기준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활동기준 충족 & 인정기준 충족 & 배제기준 충족 & 보호기준 충족 ⇒ **녹색경제활동**

□ **한국형 녹색채권**

- (정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절차, 외부검토 기관 등록제, 사후 외부검토 실시 의무화, 녹색자금 사용처 표시 등의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

□ **지원사업 개요**

- (목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조기 안착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금융·산업 현장의 녹색금융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이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 발행금액의 0.2%(대기업·공공기관 등) 또는 0.4%(중소·중견기업)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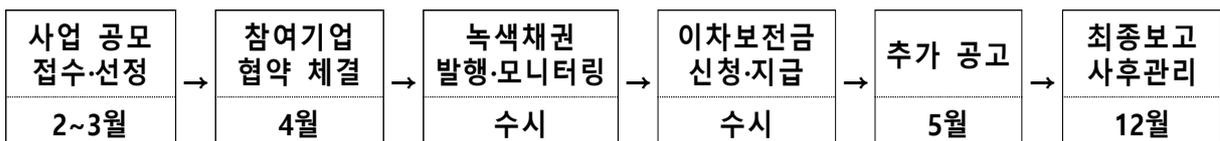
- (사업기간)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24.5월 지원사업 추가 공고 예정)

\* 예산 : 7,680백만원

- (신청요건)

구 분	주요 내용	
장기신용등급	○ 대기업·공공기관 등	A <sup>0</sup> 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 충족</li> <li>○ 자금사용(용도)이 시설자금을 비롯한 설비투자금</li> </ul>	

- (세부일정)



## 나.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 지난 3월 26일 환경부와 5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 협약(협약기간은 금년 말까지)을 체결했다.

\* 성일하이텍, 에코프로씨엔지, 포스코HY클린메탈, SK에코플랜트, 에너지머티리얼즈

□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품을 생산할 때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니켈, 코발트 등의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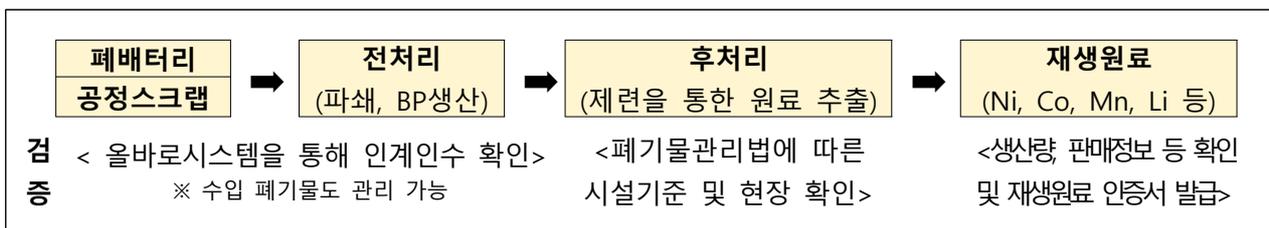
□ 환경부는 이번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생원료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인증제도 마련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며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업체들은 폐배터리 재생원료 정보를 이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없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원료 인증이 가능하며, 객관적인 신뢰성을 확보

### <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안) >



붙임 : 시범사업 협약문

환경부-폐배터리 재활용 기업 간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서」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이하 ‘협약 당사자’라 한다.)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추출한 희소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이바지하고,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방향) 협약 당사자는 폐배터리로부터 추출한 희소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순환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으로 함께 노력한다.

제2조(기관별 역할) 협약 당사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한다.

1.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추출한 희소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받기 위한 시범사업 및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2.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재생원료 인증제도, 사용기반 구축 등을 위해 행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3. 한국환경공단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재생원료 인증체제를 검토·개선한다.

제3조(협의 조정 등) ①협약 당사자는 이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진밀히 협력하고, 이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사전에  
상호협의 조정하여 처리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협약이행,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부시책, 경영정보,  
기술 및 영업비밀을 본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  
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업무협약 기간) 본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4.12.31까지 한다.

제5조(보관) 이 협약서는 협약당사자 간에 서명하여 각각 1부 보관한다.

2024. 3. 26.

작 성 자

■ 종합상담실 환경부 파견관

양근미

KOTRA자료 24-063

##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동향 (2024년 2분기)

발행인		유정열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4년 7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종합상담실 (02-3497-1738)
I S S N		2983-2144



Copyright © 202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